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개정 2024.12.00.>

1. 시공실적

가. 동일공사실적 평가등급 및 평점

(1) LNG 저장탱크 공사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500억원 이상	2.00	시공실적점수= 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당해공사의 실적인정 단위용량×B)
5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1.00	
배 점	15점(12점)	

(2) LNG 저장탱크 공사 이외의 공사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1,000억원 이상	2.00	시공실적점수= 배점×(최근 10년간 시공실적)/ (당해공사의 발주규모×B)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50	
5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1.00	
배 점	15점(12점)	

※ 주 : 간이형 건설공사의 경우, “ () ” 안의 점수로 심사한다.

나. 공종그룹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찰은 해당내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1) 종합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실적은 ‘주된공사의 추정가격×만점계수’ 까지만 인정한다.
 - 1-2) 전문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실적은 ‘주된공사의 추정가격×만점계수×해당 전문업종 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공종그룹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되, 합산 실적은 다음 ① 또는 ②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① : 주된공사의 추정가격×만점계수×해당 전문업종 비율×{∑(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② : 주된공사의 추정가격×만점계수×해당 전문업종 비율×(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sum(\text{각 종합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 \times \text{시공비율}) \div \text{주된공사의 추정가격} \times \text{만점계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다.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찰은 해당내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주된공사의 추정가격(간이형 공사는 예비가격기초금액)×만점계수'까지 인정한다.

1-2)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주된공사의 추정가격(간이형공사는 예비가격기초금액)×만점계수×해당 전문업종 비율' 까지 인정한다.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전문업종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되, 합산 실적은 다음 ① 또는 ②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① : 주된공사의 추정가격(간이형공사는 예비가격기초금액)×만점계수×해당 전문업종 비율×
{ $\sum(\text{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② : 주된공사의 추정가격(간이형공사는 예비가격기초금액)×만점계수×해당 전문업종 비율×
(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sum(\text{각 종합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 \times \text{시공비율}) \div \text{주된공사의 추정가격}$ (간이형공사는 예비가격기초금액)×만점계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2. 시공인력 심사

(1) LNG 저장탱크 공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평점
시공인력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15	A. 20.0 이상	15.0점
			B. 17.5 이상	14.5점
			C. 15.0 이상	14.0점
			D. 12.5 이상	13.5점
시공인력 등급		등급 = $\sum(\text{등급계수} \times \text{경력계수} \times \text{관리능력계수})$		

(2) LNG 저장탱크 공사 이외의 공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평점
시공인력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15	A. 25.0 이상	15.0점
			B. 22.5 이상	14.5점
			C. 20.0 이상	14.0점
			D. 17.5 이상	13.5점
시공인력 등급		등급 = $\sum(\text{등급계수} \times \text{경력계수} \times \text{관리능력계수})$		

※ 주 :

- 1) 시공인력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시공실적 심사 대신 동 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2) 시공인력심사는 고난이도 공사 중 시공실적 심사만으로 당해공사의 경쟁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시공인력 심사 여부는 해당 입찰공고에 따른다.
- 3) 시공인력 기술자는 당해 공사와 동일한 공사의 현장에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기술자 등급(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경력(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동일공사 현장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관리능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4) 시공인력 심사 대상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심사대상 인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한다.
- 5)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시공비율 30%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6) 시공인력은 입찰참가 업체가 당해공사의 심사공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로 확인하여 심사한다.

3.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

- 1)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은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실적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의 범위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시행한다.
- 2)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산식은 다음과 같다

○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 $\frac{10\text{년간 동일 공종그룹실적}}{10\text{년간 동일 업종실적}} \times 100$

○ 평가등급 및 배점은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시행한다.

- 3)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4) 공동수급체의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은 각 구성원의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 5) 동일한 공종그룹실적 및 업종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 6) 토목 및 건축이외의 업종은 동일공종 전문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7)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7-1)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동 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4 배치기술자 심사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8	$\text{평점} = \text{배점} \times \left(\frac{A \times 2}{365 \times 6} + \frac{B}{365 \times 6} \r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공사의 기타직 위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시공	2	$\text{평점} = \text{배점} \times \left(\frac{C}{365 \times 5} \r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또는 해당업종 공사의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안전	1	
		품질	1	
계			12	

※ 주 :

- 1) 배치기술자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 참여 경력을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에 한하여 참여경력을 심사하며, 분야별 책임자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2)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의 심사대상 공종은 발주공사와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참여경력은 [별표2-1]에서 정한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근무일수를 합산한다.(단, 입찰공고에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유사공사 참여실적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유사공사실적 참여경력을 포함한다) 다만, 시공실적심사시 일반공사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동일공종그룹 또는 해당업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동일공종그룹범위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 명시)
- 3) 분야별 책임자 중 시공책임자의 공사규모별 배치인원은 다음과 같으며, 시공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동일공종그룹의 시공분야 참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책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 시공책임자별 개별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동일공종그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업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해당업종이 2개이상인 경우 주된 업종에 대하여 평가한다.)

공사규모	시공책임자 배치기술자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인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2인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3인

- 4) 분야별 책임자 중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의 배치인원은 각 1인이며, 품질 또는 안전 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발주공사의 주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품질 또는 안전분야 참여 근무

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5)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다만,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제출은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배치기술자 심사는 서류제출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평가 시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 7)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 9) 시공참여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 10)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시공부서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내지 다) 및 마)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 나)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 질병이라 함은 중증질환 또는 장애등급 판정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를 말한다
 - 다)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 단, 건설공사 기간이 5년 이하일 경우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라)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 예정인 경우
 - 마) 발주처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를 명시하여 교체된 자는 교체일로부터 향후 2년동안 우리공사 모든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향후 종합심사 배치기술자로 제출될 경우 0점 처리한다.
 - ※ 공사시공부서장은 마)항으로 교체된 자는 즉시 공사주관부서에 통보한다.
- 11) 공사주관부서는 계약체결 후, 종합심사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를 공사시공부서에 통보한다.
- 12) 공사시공부서는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공사주관부서 및 본사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매건당 0.2점씩 감점한다.
- 13)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건수는 해당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14) 12) 및 13)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해당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 사 요 소		해당공사 참여경력 인정기준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호의 “시공” 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 (기타 직위경력은 심사공종의 시공분야 참여 경력임)
분야별 책임자	시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
	안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 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품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호의 품질관리 분야의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참여 경력

5. 시공평가결과 심사

- 1) 시공평가 결과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2) 시공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공동수급체로서 시공한 실적인 경우 평가자료상에 명시된 해당업체 시공금액으로 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 다만,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14.7점)를 부여한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 4) 평가결과 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송부한 자료를 활용한다.
- 5)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점수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따른다.
-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D등급(14.7점)을 적용한다.
- 7) 당해공사가 전문공사인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8)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등급	시공평가 점수	평점
시공평가 점수	A등급	95점이상	15.0
	B등급	95점미만 92점이상	14.9
	C등급	92점미만 89점이상	14.8
	D등급	89점미만 86점이상	14.7
	E등급	86점미만 83점이상	14.6
	F등급	83점미만 80점이상	14.5
	G등급	80점미만	14.4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항목	배점	참여비율 등급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2(8)	A. 20%이상	2.0(8.0)
		B. 15%이상, 20%미만	1.9(7.6)
		C. 10%이상, 15%미만	1.8(7.2)
		D. 단독	1.6(6.8)

※ 주 :

- 1) 공동수급체 구성심사는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비율(시공비율)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 2) 다만,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심사는 중소기업(대표자 제외) 참여비율(시공비율)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 2-1) 동일공사실적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에 심사대상으로 실적미보유사를 명시한 경우 중소기업 또는 실적미보유사의 참여비율에 따라 심사한다.
 - 2-2) 심사대상 실적미보유사의 범위 및 인정기준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료 또는 우리공사의 제출안내에 따라 입찰자가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중소기업 확인서로 평가한다.
- 3) 간이형 건설공사의 경우, “ () ” 안의 점수로 심사한다.

7. 건설인력고용 심사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1 (0.2)	고용 탄력성	1 (0.2)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1.00(0.20) 0.90(0.18) 0.80(0.16) 0.70(0.14) 0.60(0.12) 0.50(0.1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1 (-0.2)	A. 0건 B. 1 ~ 2건 C. 3 ~ 4건 D. 5 ~ 6건 E. 7 ~ 8건 F. 9건 이상	0.00(0.00) -0.20(-0.04) -0.40(-0.08) -0.60(-0.12) -0.80(-0.16) -1.00(-0.2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			

※ 주 :

- 1) 건설인력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와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2)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 2-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 2-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2-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2-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 2-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 3)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 3-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 3-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와 심사대상 기간 동안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 3-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 4)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인력고용 심사는 각 구성원별 건설인력고용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고용 탄력성 점수는 기본점수(6등급, 단 간이형공사는 5등급)를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 7) 간이형 건설공사의 경우, “ () ” 안의 점수로 심사한다.

8.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심사 항목	배점	심사요소	등급	점수
건설 안전	-1.0 ~ +1.0	사고사망만인율	$\text{평점} = 1.0 - 1.0 \times \left(\frac{\text{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text{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right)$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1.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A. 1건 B. 2건 C. 3건 D. 4건 E. 5건	-0.20 -0.40 -0.60 -0.80 -1.00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0 +0.90 +0.80 +0.70 +0.60 +0.5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25 -0.50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25 -0.50

※ 주 :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1.0점 또는 1.0점으로 한다.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 2-1) <삭제>
 - 2-2) <삭제>
 - 2-3) <삭제>
- 3) <삭제>
- 4)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 4-1) <삭제>
 - 4-2) <삭제>
 - 4-3) <삭제>
- 5)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

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5-1) <삭제>

- 6)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한다.
- 7)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F등급을 부여한다.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9)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10) 우리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11)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배점한도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 12)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0.50점)를 적용하고, 나머지 심사요소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9. 공정거래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공정거래	0.60	상호협력평가	0.6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0.60		
				B. 90점이상~95점미만		0.54		
				C. 80점이상~90점미만		0.48		
				D. 70점이상~80점미만		0.42		
				E. 60점이상~70점미만		0.36		
				F. 60점미만		0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0.6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A. 시정명령	-0.150
				B. 과징금 10억미만	-0.180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0.210			
				D. 과징금 30억이상	-0.240			
				E. 법인고발	-0.270			
				F. 법인 및 개인고발	-0.300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0.150		
					B. 과징금	-0.220		
					C. 고발	-0.300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0.150		
B. 과징금	-0.220							
C. 고발	-0.300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주 :

- 1)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2) 상호협력평가 등급
 - 2-1) 상호협력평가 등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 등급을 말한다.
 - 2-2) 상호협력평가 등급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 3)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 3-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3-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3-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 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 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 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3-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정거래 심사는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합산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36점)를 적용하고,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10.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40 (0.20)	$\text{평점} = 0.40(0.20) \times \left(\frac{\text{지역업체 참여비율}}{20\%} \right)$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는 0.40(0.20)점]

※ 주 :

-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시공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평가한다.
- 2)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단,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포함한다.
- 3)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LNG 저장탱크 신규 건설공사(기화송출설비 포함) 또는 주배관 신규 건설공사 발주시 해당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한다.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 5) 간이형 건설공사의 경우, “ () ” 안의 점수로 심사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심사한다.

11. 경영상태 심사

- 1) 경영상태 심사는 간이형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함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4)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경영상태 평점 × 8/35
- 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6) 신용평가등급은 다음 표에 따라 평가하며,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평가등급에 대한 평가등급 및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평점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5.0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4.7
CCC+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34.4